

의안번호	제 640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6월 2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
(안 제6조제1항제4호)
 - 창조경제분과위원회 → 경제분과위원회
-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: 2018년 12월 31일 → 2021년 12월 31일
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경제분과위원회

제11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를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자문 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 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~ 3 (생 략)</p> <p>4. <u>창조경제분과위원회</u></p>	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</p> <p>1.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</p>
<p>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<u>유효기간</u>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<u>유효기간</u> 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3. 관련조문

- 제9조(수당)
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7개 분과 100명,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
- 다. 추 계 결 과 : '17년부터 향후 4년간 총 200,000천원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
세 출	20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및워크숍비용	20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50,000천원정도 (운영수당 30,000천원, 행사운영비 20,000천원)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두표